第100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 1 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0年 5月23日(火) 13時28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鐘路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都市住民監査請求에관한條例(案)
3. 2000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都市住民監査請求에관한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2面
3. 2000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鐘路區廳長 提出) 17面

(13時28分 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20만 종로구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매진하시는 金賢植 行政管理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들은 조례(안) 2건과 行政管理局, 生活福祉局 소관 追加更正豫算(案)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동기능 전환에 대비하여 일선행정 보조자인 통반장을 통해 각종 고지서를 직접 송달토록 하는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주민의 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와 그리고 주민들의 혈세로 충당되는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등입니다. 말씀드린 본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들은 모두가 주민의 권리 또는 주민복지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매우 중요한 사항의 내용들입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IMF체제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이 과다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張慶洙 議事擔當主事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張慶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0년 5월 1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 5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었으며, 2000년 5월 15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0년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조례(안) 심사를 한 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서울特別市鐘路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3時33分)

○委員長 李憲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지난 구민의 날 행사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열정어린 참여로 지역주민들이 모처럼 한곳에 모여서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을 갖게 해주셔서, 더욱이 구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행정위원회 李憲九 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동기능 전환에 대비해서 일반 행정 보조자인 통반장을 통해서 각종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도록 하여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송달비용절감 및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 중 통반장 임무조항에 고지서 송달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憲九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은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한 단계 높은 고품질의 문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姜光日 專門委員!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0년 5월 10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대비하여 현재 동직원을 통하여 교부하던 각종 고지서를 통반장을 통하여 송달하기 위하여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개정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통반장의 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협약에 의하도록 (안) 제7조에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통반장의 임무에 각종 고지서나 각종 지방세, 과태료, 부담금 등 고지서 송달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고지서 송달 방안별 비교 검토입니다. 먼저 통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경우 장점으로는 등기송달에 비해서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신속정확한 송달과 책임 송달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고지서를 통별로 일일이 분류를 해야 하고 통반장을 통하여 송달하더라도 관외분은 어차피 등기송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분류를 해야 됩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조서를 작성 관리해야 되는 등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여 일부 통장들이 비협조적일 경우에 체계적 통제가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기우편 송달을 할 경우에 장점으로는 송달 근거가 명확하고 가산금 등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

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송달료가 과다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지방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작년도 송달매수를 환산해 보면 약 5억 6,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통반장을 통하여 고지서를 송달하는 타구의 사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동구는 작년부터 전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시범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99년 10월 16일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금은 1건당 일반 우편요금의 2배인 340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강남구는 맞벌이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등기송달률이 50%가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청장 방침사항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금은 1건당 200원이지만 너무 적기 때문에 5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교부하고 있는 각종 고지서 송달방법이 동기능 전환 시에는 불가능하여짐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인 바 지방세, 부담금, 점용료 등 세입내용별 송달방법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개별조례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성동구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고지서 송달방법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동직원을 통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득이 등기송달을 해야 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반장을 통해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통반장이 비협조적일 경우에 징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과정에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51조 서류의 송달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51조의2에 서류송달의 방법으로 제1항에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에 서류송달의 방법으로 제1항에 「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제13조의2에 보면 서류송달의 방법으로 「납입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은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로구통·반장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먼저 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앞서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말했던 우리 통장 구조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 통장들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몇 %나 진행했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전체 통장 숫자가 349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4·13선거 이전에 각 동장을 통해 가지고 일제히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통반장을. 결원 통장은 또 통장 집에서 선거인명부 열람도 있고 해가지고 결원 통장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지금 현재 통장들의 수가 각기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예를 들어서 몇 명당 통장을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인구 몇 명당

○總務課長 李東明 인구 기준은 통·반설치조례

에 인구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지금 어떻게 통장을 기준으로 해서 1개 통을 신설하나요? 그러면 세대 가구로 할 것 아니에요?

○總務課長 李東明 반은 20세대 내지는 4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개 반이. 그리고 6개 반이 1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것은 이 조례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과연 종로구 통반이 그렇게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종로구 통반 구성이 그렇게 현재 조례대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느 동은 동장들이 철저하게 해서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그렇지 못한 동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하나 비근한 예를 들면 5·6가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이십몇개 통인가 이렇게 된다고 해요. 이십칠팔개 통이 된다고 하는데 인구비례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명륜3가의 인구 9,800명이나 5·6가의 인구가 잘해야 1만명 정도도 안될 거란 얘깁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27개 통을 거느리고 있고 인구가 적은 데는 12개 통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 어느 특정인의 배려에 의해서 우리 구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처럼 통장들이 무보수원칙에 의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1년에 통장들한테 나가는 것이 1인당 164만원인가 나가요. 수당까지 합치면 그 정도 나간다는 얘깁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통장수를 줄이자는 것을 우리가 수년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시정을 안하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각 동장들한테 통반 구조조정을 하라는 강력한 공문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예, 지시한 바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몇 회나 지시했습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구체적인 공문 지시 횟수는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드릴 것이고 작년부터 저희 통반 조정을 통해 가지고 99개 통이 줄어들었습니다.

○洪起瑞委員 글쎄 99개 통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편중이 되어서 줄어들었다는 얘깁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주상복합지역하고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것도 있고 또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면적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단순하게 가구수로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 규정도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洪起瑞委員 면적 규정, 지금 아마 우리 동료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세종로동도 아마 인구 얼마 되지 않는데 그 곳도 이십칠팔개 통 될 거예요. 그러면 동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한 동은 이게 정착이 되어가는 것이고 동장들이 통장들 눈치나 보고 입장 곤란한 데는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씩 질의를 했을 때도 분명히 집행부의 답변이 그러면 4·13총선이 끝난 이후에 모든 것을 과감하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총선도 끝났고 모든 중요한 대사가 끝났으면 이번 달에 우리가 한 이후로는 구조조정을 명확히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위원님 고견을 들어 가지고 또 우리 통반장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안)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강력한 공문을 동사무소에 하달을 할 용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예.

○洪起瑞委員 그렇게 해서 5월달 중 6월까지는 전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올바른 통반장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이게 조례에 보면 4조에 통장 임기가 있어요.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임은 몇 회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횟수 제한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무한정 이렇게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 때문에 2년으로 여기에다 굳이 삽입을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통장들이 올바르게 해서 모든 것을 똑바로 처리하는 통장들은 동장한테 눈 밖에 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잘라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재위촉을 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면 3회면 3회, 2회면 2회 한시적으로 규정을 둬야 연임제라는 것이 명분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만 해놓고 나면 동장 앞에 가서 알랑거리고 하는 통장들은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계속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지적을 하고 이런 통장들은 가시 같으니까 임기가 끝나버리면 잘라버린다 그런 장치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임기제를 2년으로 한다면 3회에 한해서 한다든지 2회에 한해서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總務課長 李東明 예,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직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메리트가 있는 직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4조에 있는 임기 2년이라는 것은 일종의 예시적이라고 보여지고 보통의 경우에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경합지역도 가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잘 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도 이런 때에 위원들이 질의할 때만 넘어가기 위한 답변으로 일관하시지 말고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하자는 얘깁니다. 우리가 안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5조1항에 보면 거주하는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2호에 보면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해놓고서 제3호에 가면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0세가 넘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일개 통장까지 꼭 필요로 할 통장인지 여기에 앉아서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總務課長 李東明 그래서 통장의 임용은 규정상은 이렇지만 동장의 전결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동정을 운영하면서 임용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우리가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은 50세까지로, 통장들은 그렇지요? 원칙은 50세까지인데 10년을 더 해서 60세까지로 보거든요. 그러면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정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군다나 고지서 송달을 해야 되고 이런데 노령 통장들이 과연 그것을 고지서를 가지고 일일이 호별 방문을 하면서 고지서가 송달이 될 수 있을까요?

○總務課長 李東明 여기 3호에 해당하는 조항은 예외조항으로 보여지고 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통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서로 하려고 경합하는 지역은 1호에 준해서 하고 통장을 할 사람이 없으면 2호, 3호로 나가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할 사람이 없는데 이런 1호와 2호 사항의 조건으로 맞춰서 예를 들어서 50세 이상 사람이 있다면 민방위대 지원근무로 민방위대장 직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견을 받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지금 현재 통장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민주화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은 통장을 안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이 통장 때문에 각 동별로 이게 골치가 아파요. 그러면 우리 상급기관은 구청에서 이 문제

조항을 삭제를 해주든지 해야 동장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지 통장들을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갈아치우고 싶어도 못 갈아치워요. 통장들을 교체를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 1호와 2호는 놔두지만 제3호는 삭제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3호를 삭제를 해줘야 동장이 통장을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지금 보면 80세가 된 통장도 있을 거예요. 종로 관할에 70세도. 그러면 그 분들은 통장 일을 안 해요. 하나의 호메이니로서 동장이 하는 일 사사건건 시비나 걸고 동네의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단서가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통장을 교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과감하게 상급기관인 구청 내에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동장들이 일을 하고 새로운 통장으로 위촉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유능하신 분들이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번 조례 할 때 3호 같은 것은 삭제를 하는 쪽으로 하시죠? 어때요?

○總務課長 李東明 위원님 의견은 좋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다시 한 번 받들어 가지고 각 동장 의견을 들어서 다음 기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우리가 시한을 둡시다. 5월말까지 이게 5월까지 안되겠구만. 그러면 6월까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완전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조를 하시죠?

○總務課長 李東明 예, 여기에서는 약속은 드릴 수 없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장 의견도 듣고 또 개정하려면 입법예고 과정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洪起瑞委員 그렇게 하면 금년 지나고 또 여기 앉아있다가 과장님 진급해서 다른 데로 가시게 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總務課長 李東明 현행 통장 직에 있는 분들의 인적사항이나 우리가 유형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자세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안)이 만약에 되고 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동장들한테 이번에 통 개편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을 공문으로 하달할 수 있죠?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예.

○洪起瑞委員 그렇게 해서 이번에 6월달에 행정감사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동에 내려가서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한번 지켜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과연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는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공문은 바로 내일이라도 바로 시행을 하세요. 이것은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정리를 하고 통 하나라도 개편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죠. 그저 앉아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급기관인 구청 차원에서 동장들한테 자꾸 독려를 하고 공문을 내려주고 해야 동장들이 그 공문을 가지고 통을 축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동장들이 몇 십년 몇 년 동안 통장들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당신 그만 두시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강력한 공문이라도 시달을 해주면 입장 곤란해도 '통장님, 공문이 왔으니 부득이 통폐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구실도 주고 그러다 보면 우리 종로도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나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문제도 그 공문을 할 때에 될 수 있으면 60세 이상짜리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라는 문구도 하나 넣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고지서를 송달을 해야 될 이런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사실 노령화된 통장들이 그것을 어떻게 집집마다 보내겠어요? 만일에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이 안되어 가지고 세금 같은 것이 제대로 납부가 안되었을 때는 과연 그 책임은 어디 있느냐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맛이 나더라고 통장들도 새로 위촉된 통장들은 열심히 잘

합니다. 사실 동사무소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 일이 처리가 되는데 30년 20년 된 사람들은 동장이 말을 해도 '홍' 쳐다만 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어디서 동직원들 약점이나 잡아가지고 와서 큰소리나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행정이 발전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장들이 해촉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구청에서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공문을 하달할 때 60세 이상은 안된다 1차적으로 그것을 해주면 동장들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3호에 규정을 두어서 재위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정리를 할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중이라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공문을 하달하실 수 있는 저기를 분명히 하신다고 우리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일모레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공문이 내려왔는가 확인을 해 볼 것입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내일 모레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정조례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개편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꼭 그렇게 해주세요.

○總務課長 李東明 틀림없이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나가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과장님! 아까 洪起瑞委員님 말씀하신 구조조정을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까?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總務課長 李東明 이번 개정조례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개편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해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작년 11월달에 동 감사에 나갔을 때 종로 1,2,3,4,5,6가동을 보니까 느낀 것은 통조직이 그대로 많이 있고, 둘째로는 노인정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는데 거기는 지금 공동지구 다시 말하면 도너스형이라 말입니다. 낮에는 인구가 많이 있고 저녁에는 없는 지역인데 왜 거기는 통조직이 많이 있고 노인정이 많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구세를 많이 축내는 것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洪起瑞委員님이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과장님! 아주 특별하게 구조조정을 해주십시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우리 金賢植 行政管理局長님하고 우리 李東明 總務課長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요지를 추려서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할테니까 답변을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 중에서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확정하자고 올린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洪起瑞委員님께서 물으실 때 연령제한자가 하한선이 몇 세이고 상한선이 몇 세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總務課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통·반설치조례 제2항1호에 보면 30세에서 50세가 원칙이고, 2호에서는 60세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3호에서는 60세 이상도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거기서 문제점이 나온다 말입니다.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런데 유독 종로구는 통장들이 전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노령화가 아닙니다.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라는 내용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 동 같은 경우도 17명 통장 중에서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또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나머지 분들입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우리가 고지서 송달하라고 그러면 제대로 주민들한테 전달이 될까 의심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전달이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李東奎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러한 고지서 송달이 가능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런 분들이 고지서 송달이 제 건강을 비추어볼 때는 70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나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대해서 현재 통반장들의 고령화에 따라서 앞서 洪起瑞委員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봉사하는 자세가 아니고 군림하는 자세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것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행정지침이나 운영하는 면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누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이것을 개정해서 박아주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누누이 시정조치 해달라고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 조치된 것이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3대 우리 의회가 열린 지가 얼마입니까? 3대 들어와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동료위원이신 洪起瑞委員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또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나 같은 나이 정도면 아직도 건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70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창신3동에 와서 통장으로 근무 한번 해 보실래요? 우리 3동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고지대인데 올라오셔서 거기서 세금고지서 한번 돌려보시겠습니까? 아마 혓바닥이 다섯 자는 빠져갖고 헉헉거릴 겁니다. 유독 달동네가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령화되어 있는 통장들이 과연 고지서 송달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 주민과의 마찰이 항상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나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또 통장과 주민과의 어떤 좋지 않은 감정대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이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은 어떻게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總務課長입니다. 이번에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목적은 순전히 총무과에서 발의했다기보다는 앞으로 기능화될 경우에 우리 세무1·2과의 고지서 송달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의 목적이 뭐냐하면 등기우편 송달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통반장의 위·해촉은 아까 동장 전결권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의원님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 부분도 과장님이 여기서 지금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위원들도 몇 번씩 경험을 했습니다. 통장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비춰도 보고 건의도 해보고 추천도 해봤습니다. 다 묵살되고 캔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만큼은 꼭 제가 조례로 관철시키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시정해 주시지 않으면 조례에 의해서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고지서 송달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비를 아끼고 또는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세비를 거두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첫번째, 통반장들을 이용하려면 통반장들이 평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것은 물 건너간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가 개정되어서 실시한다고 합시다. 단점이 막 터져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은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반장들의 평준화 그래서 조례를 개정시켜야 된다면 조례에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여기 동료위원께서 종로구통·반설치조례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분명히 30세부터 50세, 부득이한 경우에 60세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6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서 방안에서 지금 드러누워 있음에도 통반장 역할을 맡기면 아들 아니면 며느리, 부인이 대리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장현황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이 설치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설치조례안 백날 만들어봐야 전부 잘못된 것 투성입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李東奎委員께서 걱정하시고 洪起瑞委員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반설치조례는 종로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나 규칙이나 법에는 꼭 예외조항을 둡니다. 그래서 지금 3조제1호 및 2호 외에 특별히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이 부분을 가능하면 극소화하기 위해서 운용의 묘를 기할 것이지 이것을 없앨 때는 타 시군구 통반장 조직하고 문제가 있다고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 한번 시켜 가지고 통반장들의 평균 연령을 조사해 볼까요? 아마 그렇게 해 가지고 신문기자들한테 갖다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탁상에 앉아 가지고 모르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군림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새로 와도, 통친회라고 합니다. 통장친목회 그것이 거의 공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통장친목회를 내세워 가지고 통장들이 "너 까불지마. 너 까불면 누구한테 얘기해서 보내버리겠어" 꼼짝 못합니다. 그런 사정을 너무도 모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이 선행이 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이 조례 백날 만들어야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입니다. 지금 현재 통장의 임무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운용의 묘로 고려해 보자. 저희들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3조를 바로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섣불리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분명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종로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법령이나 조례 규칙은

○李東奎委員 국장님! 종로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다른 데하고 맞춰야 됩니까? 우리 종로구에 맞는 조례개정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왜 전국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우리 종로구에 맞는 것만 얘기하자고요. 다른 것은 얘기할 것 없이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법에도 예외조항은 꼭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옳다고 저희도 긍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삭제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李東奎委員 더 큰 문제라는 게 어떤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 이런 조직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든지 정계를 개편하는 것은 그렇고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을 안 댄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맞죠? 알고 있음에도 그 조직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인식하시죠? 이거 절대 시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저렇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또 하나 통장들 중에서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사해 보면 상당히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을 가지고 있는 통장들의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가 고지서를 주었을 때 즉시 송달이 가능한가 그 사람들은 본인이 직장을 가졌을 때 부인이나 반장들을 시켜 가지고 전달합니다.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를 전달할 때 보상금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는 보상금 기준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 잡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340원 정도입니다.

○李東奎委員 아까 姜光日 專門委員의 얘기대로라면 타구의 사례가 성동구가 34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겠다는 얘기입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李東奎委員 강남구에서는 건당 200원인데 앞으로 500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라는 것, 340원 가지고 과연 통장들이 이것을 돌려 가지고 효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수보다는 통반장에 대해서 구정에 통반장의 임무를 충분히 고지해서 협조라든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건당 340원이라는 것을 보조를 받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갈 것이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400원을 주든 300원을 주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검토하실 것으로 믿고 340원이면 지금 타구하고 보조를 맞춘다고 하는데

○總務課長 李東明 거기에 대해서 우리 통반설치 조례는 일종의 근거조례이고 시행과정에서는 각 과에서 세부 개별 조례나 규칙에서 정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알겠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물었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통장임기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통장이 무려 20년 이상을 통장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진취적이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구조조정을 해왔는데 정말로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령화되어 있는 노령화가 아닙니다.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되어서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면서 지팡이를 짚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부터 실시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통장임기가 2년으로 하되 단 연임할 수 있다 이 연임이 무한정 연임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통념상 연임할 수 있다는 건 한두 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씩 군림시켜 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군림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셔도 통장들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우리 동에 무슨 일로 왔다 그러면 "저 사람들 왔다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쯤 구조조정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약속을 저한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어떤 약속을

○李東奎委員 조금 전에 저하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꼭 긍지를 갖고 실천에 옮기겠다는 약속을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국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總務課長 李東明 아까도 洪起瑞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개정조례 시행 관련 해가지고 구체적인 개편지침을 만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고맙습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위원장님도 받았고 洪起瑞委員님도 받았고 저도 받았으니까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鄭泰淳委員! 질의하십시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누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왔지만 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게 되고 오늘까지도 통반조례를 개정해서 동기능 전환에 따라 어차피 그것을 등기를 활용하면 좋겠지만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 능

률적으로 하고 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세 많은 통장님들이 어떤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많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장관리를 그렇게 해달라고 적극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재론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 주기고 만약에 비용 때문에 우리가 통반장을 이용해서 송달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와 같이 우편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근거가 남습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서 입증자료로 쓰게 되는데 우리 통반장이 송달을 했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에 봉착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 드리겠습니다. 鄭泰淳委員님께서 송달에 따른 책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련 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별도지침을 마련하고 송달부나 영수증 이런 것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달 여부가 분명히 가려집니다. 그래서 구에서 원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鄭泰淳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송달에 대한 불투명, 근거가 희박하다든지 책임소재의 불투명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泰淳委員 어차피 우리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의원들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그런 의지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꼭 관철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나 이 자리에 계신 洪起瑞委員님이나 金正大委員님의 동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몇몇 사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상처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구청 자체에서는 상부의 지침이라든가 어떤 정책이 입안되어 시행된다 하더라도 좀더 심도 있게 의견청취를 하셔서 추후에 어떤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이번에 통반장조직 정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노령인구 또 지금 같은 경우 너무 젊은이를 주장하다보면 60대도 젊은 청춘이라고 반대의견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런 점을 분명히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깊은 연구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입니다. 鄭泰淳委員님이 걱정하시는 통반장 운영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반장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되겠지만 여기 계시는 시민행정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 타 시군구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고령화 통장이 20년 이렇게 했다는 문제점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례상으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상 이런 것을 전체 통장을 원하는 분 또 원하지 않는 분 또 지역을 기피하는 분 등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鄭泰淳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험담입니다. 통장이 결원이 되어서 통장으로 모시려고 저 같은 경우는 가정마다 다니면서 꼭 맡아달라고 사정을 해도 전부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서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확인이 되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 또 가급적이면 지금 기동성 있는 통반장들로 구성해서 하면 좋은데 그

렇지 않을 때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한다면 다시 재론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앞으로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泰淳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朴鍾植委員! 질의하십시오.

○朴鍾植委員 통반장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을 보면 3통이라 해서 고건 시장 사는 지역인데 통장이 그만둔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통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문제도 통장이나 반장이 돌리는 지역은 20% 내지 30%밖에 안되고 거의 동직원들이 7,80%를 돌려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업무가 그렇게 많이 축소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동장님들이 통반장 조직을 다시 한다거나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도 70이 넘은 통장이 계십니다마는 막상 그 통장이 그만두면 통장을 안 하려고 하는 지역도 있고 또 그만두게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만큼 구청에서나 동장님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 문제가 지금 2001년도까지 우리가 142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한다고 했나요? 내년까지. 그리고 동에서 모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던 사람들을 구청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도 전부 업무분담을 시킬만한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무엇 때문에 동 업무를 축소시켜 버리면 주민들 불편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지금 현재 통반장 나약한 조직 가지고는 고지서 같은 것을 원활하게 배달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도 많을 것이고 또한 장 돌리는데 340원씩 줘가지고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원활하게 돌려질 것인지 여러 가지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업무를 반 이상 축소시켜 가지고 그 인력을 다시 어디다가 쓰려는지 우리 위원들은 여러 가지로 전부 의문되는 것도 많고 또 지금 그렇게 동 업무를 축소를 시킬 때 과연 많은 주민들 불편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이래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방침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안 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질문이 아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성원도 되었으니까

○委員長 李憲九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朴鍾植委員님께서 아주 토론에서 하실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래들 수고하셨는데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2分 會議中止)

(14時36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監査請求에관한條例 (案)(鐘路區廳長 提出)

○委員長 李憲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金周會 監査擔當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金周會 監査擔當官 金周會입니다.

존경하는 李憲九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구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시 주민의 자치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으며,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최소 주민의 수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시행되는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처리한 업무가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잘못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는 서울시청에 감사를 하도록 청구하고 서울시청의 잘못 처리된 업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나 소관 중앙부처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적정 주민수를 정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서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는 2000년 1월 1일 현재 14만 1,544명이고 주민감사청구의 최대인원인 50분의 1은 2,830명이 됩니다. 적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최근 4년간 100명 이상이 관련된 다수인 민원사항을 조사한 결과 총 61건 1만 8,753명으로 1건당 307.4명이 연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온 307.4명은 다수인 민원신청시 가구별 대표 1인씩 연서에 참여하였으므로 가구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주민감사청구에서는 20세 이상 주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 가구별 20세 이상 주민수 평균인 2.03명을 곱하면 624명이 됩니다. 감사청구 주민수가 너무 많으면 주민감사청구가 쉽지 않아 제도의 도입 취지가 저해되며, 너무 적으면 주민감사청구가 많아져 수감을 위한 행정 낭비가 우려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감사청구에 적정한 주민수를 700명으로 정하여 오늘 위원님들에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신다면 주민감사청구제를 잘 활용하여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살기 좋은 종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李憲九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監査請求에관한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金周會 監査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姜光日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0년 5월 10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99년 8월 3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가 신설이 되고 감사청구시 연서할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종로구와 종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시 연서할 주민의 수를 700인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사청구 절차입니다.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구대상 및 청구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

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에서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에 대해서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되겠습니다. 청구기관은 시·도 이상의 사무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구의 사무일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실시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토록 되어 있고 결과 통지는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감사결과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당해 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24개 구별 주민감사청구 조례 제정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공포가 되어 있는 구가 6개 구가 있고 공포 예정인 구가 6개 구 그리고 의회 계류 중인 구가 12개 구로 지금 청구인의 수를 살펴보면 중랑구가 200명으로 가장 적게 되어 있고 동작, 관악구가 1,000명으로 가장 많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신설에 따라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감사를 청구할 주민의 수에 대하여는 20세 이상 주민의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00년 1월 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수 14만 1,544명의 50분의 1인 2,830명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우리 조례(안) 제2조에서 700인으로 하였는 바 연서할 주민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주민의 행정감시 기능이 저하되고 너무 적을 경우에는 감사청구가 남용되어 행정업무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700인이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안) 제2조 후단에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20세 이상 700인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법에서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20세 이상 700인 이상으로 한다」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朴鍾植委員! 질의하십시오.

○朴鍾植委員 지금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왔을 때 어디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체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하는 거예요?

○監査擔當官 金周會 우리 구청장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장한테 감사를 청구하고 서울시장이 우리 구청을 감사합니다.

○朴鍾植委員 상부기관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그렇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런데 이게 너무 숫자가 적어도 엄청나게 남발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조정을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700명 정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랑구에서는 700명에서 200명으로 되었다는 얘기인가? 조정이

○監査擔當官 金周會 중랑구하고 성북구에서는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동작구하고 관악구하고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느 것이 최적의 수인지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께 상정한 것은 과거 4년 동안 우리 구청에 다수민원이었던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100명 이상이 된 다수민원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평균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307.4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가구 개념이 아닌 인원 개념으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널리 공포가 되면 한 집이 다 도

장 찍어라 할 것 같아서 그것을 2를 곱하다 보니까 62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00명으로 했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20세 이상이 3명이면 3명이 다 찍어도 되는 것입니까?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그렇습니다.

○朴鍾植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監査擔當官 金周會 課長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답변해 보시죠.

○監査擔當官 金周會 글쎄요. 제가 지금 질문하시는 요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주민 참여, 주민에 의한

○安載弘委員 그렇죠. 주민 참여,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데 실제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도 행정관청에서 외양으로, 외관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목표들은 굉장히 많이 달성했어요. 예를 들면 서비스헌장의 제정이라든가 종로구 공무원헌장이라든가 이런 외양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달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두껑을 열고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그런 자치제도에 맞게 변화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변화했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규제는 그냥 살아있고 모든 제도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적절하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작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기본적인 취지는 지금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 주민들이 그 상급관서에 보다 활발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감사를 요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료를 굉장히 잘 뽑으셨는데 종로구 인구를 14만명으로 봤을 때 용산이나 성동, 지금 용산구는 청구인수를 500명으로 해서 공포했네요. 중랑구 같은 경우는 200명으로 했고 인구가 만만치 않은 서초나 이런 데도 700명에서 800명인데 여기는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2.5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불만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자유롭게 감사를 청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숫자를 낮추는 게 어떠냐. 지금 예를 들어서 700명이니까 300명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실제로 세대수 300명의 서명을 받는 것도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평균 주민의 청원이나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300명 정도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연서해서 보낸 것 같은데 300명에서 400명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당초에 안을 만들 때 이 300명, 500명, 700명 안을 만들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입장을 바꿔서 보면 오히려 의회나 구청장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서 시청에다 '종로구청은 믿을 수가 없다, 종로구의회도 감사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상급부서에서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취지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숫자를 너무 많이 하면 아까 취지에도 그렇고 너무 적으면, 300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지만 가지면 저희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동장들한테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조금 관련된 것, 집 하나 지을 때는 통반장 몇 사람 동원하면 300명 받는 것은 하루면 받는다는 거예요. 동장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많다

○安載弘委員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하셨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종로구 행정을 못 믿을 때 상급관서에 감사를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로구에서 일을 제대로 해서 적어도 주민의 민원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감사청구 요구할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고 주민의 뜻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행정을 펴나간다면 주민들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의 신청을 할 거란 거죠. 종로구에. 그런데 종로구에서 주민의 뜻과 관계없이 종로구 고집대로 한다면 '이러면 안되겠다 나는 종로구의 행위가 행정의 서비스가 부당하니까 나는 상급관서에 감사청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원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렇죠. 그것은 적을수록, 어떤 면에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한번 받게 되면 위원님들이니 말이지만 저희가 조금 뭐합니다마는 감사과에서 있다 보니까 외부감사에서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에 투서 한 사람만 해도 몇 개과가 며칠동안 마비가 되더라구요. 제가 와서 3,4개월동안 해보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만약 감사를 해도 다량의 인원이 투입되면 몇 개 부서가 일주일동안 이주일동안 주민에게 서비스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로 줄여서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시민이 제공해서 시에서 감사를 하면 떳떳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해명의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토론이나 이따가 수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金周會 課長이 행정을 잘 하시고 특히 기획예산과에 계시다가 감사담당관실로 가신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적어도 金周會 課長이 監査擔當官으로 계신 한은 종로구 행정은 맑고 투명해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고 본다면 굳이 청구인수를 높이 해서 주민의 기회를 적게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숫자를 낮추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監査擔當官 金周會 저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安載弘委員 실제로 주민들이 감사청구 조례를 제정해야 가능하겠지만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감사청구제도가 있는지조차 알기가 어렵거든요. 이따가 토론시간에 청구인 수에 대해서는 조정을 한번 해봅시다.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安載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鄭泰淳委員! 질의하십시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安載弘委員님께서 세대수별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인별로 하는 거죠? 가구에 관계없이.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물론 한 집에 성년이 된 사람 몇 사람을 받아도 무관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한 사람씩 받아서 많은 가정에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숫자 개념에 대해서 그런 고충도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인별로 받으면 한 가정마다 숫자가 많은 경우는 대가족 같은 경우는 금방입니다. 삼사백은. 그런데 세대수별로, 安委員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500명선이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金周會 저희는 제가 700명으로 안을 올렸기 때문에 700명이 제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500명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泰淳委員 조례(안)의 취지에도 주민들이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인원을 다소 줄이는 게 그 분들의 뜻에 부합해서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상기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泰淳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57分 會議中止)

(15時0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토론하십시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안 제2조 후단에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20세 이상 700인으로 한다」를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20세 이상 500인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安載弘委員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安載弘委員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安載弘委員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07分 會議中止)

(15時11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2000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鐘路區廳長 提出)

○委員長 李憲九 의사일정 제3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으로 먼저 각 국별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토론은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2000년도 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바쁘신 중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憲九 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모두 631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603억 2,600만원보다 28억 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83쪽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은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규격인 ISO 인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청수수료 600만원 및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지역 사회지표 개발을 위한 책자발간비 1,500만원과 개발용역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로구 공무원헌장 제작비 1,000만원은 2000년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원의 다짐을 글로 새겨 주민에게 알리고 직원 스스로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청 광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운영 10억원은 IMF 등 세입감소로 인한 재정 부족으로 정부로부터 차입한 원금 상환액입니다. 법제경영 1억 7,0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IMF로 폐지된 수당 성격인 체력단련비 250% 중 100%를 환원시키기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증·신설로 인한 계약직 및 시간강사료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로 평창, 부암, 무악, 교남동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 임차료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자부 지침에 의한 인건비 예비비는 총액의 3%인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비품구입비는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의 세외수입 편성액은 1억 8,000만원입니다. 전산운영은 7,600만원으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종합정보시스템 설치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 6,600만원 및 복합민원의 신속 정확한 자료 전송을 위한 인터넷 공개시스템 업무용 서버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2억 9,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비 2,400만원은 군 부대와 지역 향토예비군 동대간 전산 연동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동대의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 및 주민만족도 제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비 9개소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환기 증설비 7,600만원은 구청에만 개인별 전화번호를 부여하던 것을 동사무소까지 확대시켜 만성적인 회선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질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2,000만원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과 관련하여 시 인센티브 예산이 교부되어 제1별관 후문 입구에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이바지 할 예정입니다. 인사관리는 인건비로 6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당초 2000년 명예퇴직 대상자를 24명으로 편성하였으나 14명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4억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2억 2,900만원은 상용직 인부노임단가 인상분 및 노조단체 협약에 따른 수당 인상분입니다. 동 행정운영은 사업비만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종로5·6가 예비군 동대건물 보수비 100만원, 청운동 일대 도시가스 공사와 연계하고 기능전환에 대비한 도시가스 공사비 700만원, 우기시 바닥누수가 발생하는 창신2동 지하실 방수공사비로 200만원,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한 전산기기 작동중지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 3억 8,000만원은 2000년 민원행정 세계화 모범기관 및 '99 서울시 주관 민원행정평가 최우수 구에 걸맞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원실 내부 인테리어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시설비 3억 4,000만원 및 OA가구, 의자, 음향기기, 냉난방기 물품 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진흥은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 12일 개관한 종로문화의 집 운영비 1,600만원은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야간조명 전기료 900만원은 야간조명설치에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민간이전비 5,800만원은 전통사찰인 문수사 및 금선사 구비 부담금 보수비 5,400만원 및 사직대제 문화축제 지원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3,500만원은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보수 및 청운약수터 외 23개소 체육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 100만원은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총 사업비 600만원 중 자치구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 데 구의원님들의 현실감 있는 고견을 받들어서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되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李炳滿입니다. 존경하는 李憲九 委員長님! 그리고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매립지 자치구별 건설부담금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비 등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1쪽 중간부터 9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이다 10월 1일이다 해서 상황이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는 금년 10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 중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여기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5대의 3개월분 임차료 1,5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4억 500만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사업비 중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 일부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8억 1,5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종로인 사랑고리 사업 참여자 중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약 300명에 대하여 저희가 표창을 함으로써 이분들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60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금년 10월 1일부터 연령에 제한 없이 소득, 재산이 일정액이 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하게 됩니다. 이에 추가로 소요되는 11억 8,500만원 중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25%인 2억 9,6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생계급여를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의 날 어르신 작품 전시를 위한 경비 700만원과 관내 10개 경로당에 노인취미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7명의 인건비 3% 인상분 3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추가하였고 민간보육시설의 어린이를 위한 교재, 교구구입비 중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6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전액 국·시비로 조성된 의료보호기금의 '99년도 운영결산잔액 반환금 222만 3,000원 중 150만원만 계상되고 72만 3,000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족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李憲九 委員長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우리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이 구민의 복지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직결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姜光日 專門委員!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0년 5월 15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개요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이 1,457억 9,619만원이었는데 6회에 걸친 간주처리가 29억 1,505만 4,000원이고 이번 금회 추경에서 증가된 금액이 80억 854만 1,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1,567억 1,9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5.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추경재원별 분류입니다. 총 80억 854만

1,000원 중 순세계잉여금이 78억 8,522만 8,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 5,03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사용료가 1억 8,088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당초 236억 6,95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취득세, 등록세 등 세수결손에 따라 232억 6,154만원이 확정 예시되어 4억 7,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된 간주처리 내용입니다. 총 29억 1,505만 4,000원 중 일반회계가 청소년 특별종합대책 등 6회에 걸쳐 27억 9,391만 9,000원과 특별회계에서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비로 1회에 걸쳐 1억 2,113만 5,000원이 조정 교부되어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교부되어 간주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재원 배분을 살펴보면 총 54억 8,863만 2,000원 중 경상비가 법정경비 13억 4,834만원, 운영비가 4억 4,747만 9,000원으로 17억 9,581만 9,000원으로 33%를 정하고 있고 투자사업비가 26억 9,281만 3,000원으로 49%, 지방채상환금이 10억원으로 18%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원 배분입니다. 총 25억 1,990만 9,000원 중 보조금 반환액이 5,684만 3,000원, 적립금이 24억 6,3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점유율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소관이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이 79.6%,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이 18.4%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에 참고하시도록 요약해놓은 자료입니다. 유인물을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금번 추경재원 54억 8,863만 2,000원은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 54억 2,216만 2,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억 9,354만 1,000원, 시설관리공단 사용료 수입 추가편성분 등이 증가 요인이며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내시 후 세입결손으로 4억 79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과 84쪽에 민원행정서비스 국제표준규격 인증신청 수수료 및 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600만원과 2,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 바 이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국제수준에 맞게 표준화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투명성과 대외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강서구에서 '98년부터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회지표란 우리가 처해 있는 인구, 주거환경, 교통, 교육 등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 83쪽과 84쪽에 종로지역 사회지표 책자발간 및 개발용역비로 1,500만원과 3,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 바 지표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84쪽 정부재특자금 차입금 원금상환 10억원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가 7.25% 조건으로 차입한 50억원을 당초 2005년부터 상환키로 하였으나 이중 10억원을 조기상환하기 위한 것인 바 이자부담 경감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바람직한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잔액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 상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현재 우리 구 차입금 현황을 보면 총 90억원인데 그중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40억원 재경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환조건, 상환기간, 상환액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향토예비군 지원비로 2,4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 바 지원계획과 지원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99년말 서울시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1위를 하여 시비보조금 5억원을 수령, 예산편성 절차상 필운~신교동간 도로공사에 간주처리로 편입하였다가 금회 추경에서 5억원을 감액 경정하여 88쪽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와 물품구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1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임대료 1,200만원과 처리수수료 4억 500만원은 김포 쓰레기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대비하여 자체 처리를 위한 예산인 바 수거전용차량 임대 계획과 수거 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93쪽 상단에 구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2억 9,643만원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보호대상이 확대되어 예산 부족분에 대한 우리 구 부담분 25%를 반영한 것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당초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결산 결과 72만 3,000원이 추가로 발생되어 이를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서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연일 많은 업무량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님께 묻습니다. 2000년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모두 631억 3,1000만원이 맞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맞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603억 2,600만원보다 28억 500만원이 증가한 규모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28억 500만원은 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환경개선사업으로 증가된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환경사업의 증가로 본다면 환경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봉사과 관계 화장실, 업무개선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李東奎委員 내가 거기에 있는 줄은 압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말입니다. 지금 민원실 보수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李東奎委員 2년도 채 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민원실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구 청사나 지역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마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 민원봉사실과 지적과가 현재 구의 얼굴인데 사실상 일반인들이 대단히 미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자만적인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서울시 최우수 구로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다 더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런 의지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난 2년 전에 그런 설계도 못했단 말입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 설비 수준이 기본모델이 조금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그때 못하고 부분적으로 했는데 좀 체계화하고

○李東奎委員 국장님! 예산 낭비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시설해놓고 채 2년도 쓰지 않고 다시 뭉개고 시설한다는 것이 예산 낭비가 아닐까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민원실 운영개선 사업은 타구의 모범기관으로서 막상 설치할 때는 이 시설을 그대로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종합적으로 보수하고 보완할 것으로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주민만족도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환경개선금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시켜달라고 올렸는데 우리가 지금 민원실을 한 예로 보더라도 불과 수리한 지 2년도 채 안되어 가지고 거기다 또 이 많은 돈을 추가로 올려서 과연 여러분들이 칭찬 받을 일을 했는지 잘못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 종로구에 있는 구의회 의원들의 위상까지도 떨어지는 상황까지 갈 것으로 봅니다. 본예산이 603억 2,600만원인데 28억 500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환

경개선부담금으로 증가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이 민원실 개보수비라든가 화장실 개보수비도 들어가 있다 거기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 개보수비를 보면 저 산 꼭대기에 있는 화장실을 갖다놓고 개보수를 또 한다 말이에요. 그런 곳이 어디인줄 아세요? 바로 저희 동에 있는 창신3동 꼭대기 어린이 놀이터의 화장실인데 잘 사용하지도 않고 청소부들만 몇 사람 와서 사용하는 화장실을 또 개보수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산 낭비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부분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삭감시킬 거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비 2,4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없던 것이거든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향토예비군 설치 시행령 23조 3항에 의해서

○李東奎委員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부르지 마시고 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는가 그 동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군부대에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당초에 예비군 동대의 노후된 통신장비 교체구입비로 6,000만원과 지역동대간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경비 500만원으로 총 6,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구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계상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서 2,400만원만 책정한 것이다 이거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이것이 전에 없던 것이죠? 전에 없던 것을 최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비 2,400만원을 우리한테 계상시킨 것은,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청은 바로 주식회사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고 여러분이 봉급을 타 가고 존재해 있으려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다가 이익을 발생시키는 일도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李東奎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 하나는 정부에서 행자부 재정 13310-1187 작년 11월 4일부로 앞으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향토예비군의 보완장비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도록 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 내용은 예비군에 대해서 지역의 사무실 설치나 운영 및 유지비 또 장비물자를 지원하는 일 또 훈련장 및 훈련시설을 유지 지원하는 일 또 향토방위작전 급식수송 통신의료 전투시설을 지원하는 행위 또 예비군 대원의 사기앙양책과 민•관•군 유대강화 홍보 필요 기타 사용에 대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편성하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물론 기본적인 것은 지원이 됩니다마는 지역예비군은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구민들입니다. 이 지역 구민들이 예비군의 활동이라든지 운영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규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말이죠.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 이론에 보면 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든가 어떤 지침 내려온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지침은 어디서 내려온 것입니까? 지침을 서울시에서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국방부에서 받으신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자부에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무조건 다 따라하면 나중에 우리는 손발이 찢어져 갖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보조금을 내려주고 그 속에서 사업을 해야되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아무 대책 없이 지침만 내려오면 그것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줬다고 해도 여기서 이유를 달아줘야 하는 겁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위원님께서 타구나 시군구를 파악해보면 알겠습니다. 지역 재정이 허락하는 한 거의 다 지원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6,500만원 지원요청을 했는데 동대 전산망 구축비로 500만원과 동단위 기본 장비 19개동 100만원씩 해서 최소한도로 제일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李東奎委員 알아요. 그 적고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고 크고를 떠나서 이 목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군 육성경상보조비 자체, 이 용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고 크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다가 이것을 위임을 시켜서 우리보고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국가에서 재특자금 얼마 갖다 썼습니까? 우리가 90억인가 아니 중앙정부에서 가져온 게 말이에요. 50억이죠? 이 50억 중에서 최소한도 우리한테 이자를 싸게 해준다든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국가사무를, 위임사무가 아닙니다. 국가 위임사무가 아니에요.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우리보고 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부분은 쉽게 승인을 해줄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다 목을 걸고 발을 디뎌놓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드컵 및 주민만족도 제고사안 판단으로 해서 화장실 개보수 공사라고 했는데 9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밝혀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실테고 혹시 과장님 중에 누가 9개 화장실 개보수가 어디어디입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 누구 계세요?

○總務課長 李東明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화장실은 우리 동네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우리 구청 건물 내에 본관에 5개소와 제1별관 3개소 그리고 제2별관 1개소를 포함시킨 겁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서 여기에서 거창하게 2002년 월드컵 및 주민만족도 해가지고 거창하게 잡았습니까?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지금 9개소입니다.

○李東奎委員 우리 구청 내에 있는 9개소를 여기에다 전부 다 넣은 거예요?

○總務課長 李東明 예, 지역화장실은 청소과에서 별도로 하고 우리 구청에 있는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화장실개선추진반까지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李東奎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던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시니까 한두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인사관리 인건비로 6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명을 해주실래요?

○總務課長 李東明 총무과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李東奎委員 예, 답변하시죠.

○總務課長 李東明 인사관리비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예퇴직수당이고 또 하나는 상용직 일용인부임입니다. 우리가 금년 들어 가지고 당초 기정예산이 8억 4,894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말 현재까지 4억 2,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퇴직인원 공무원 숫자 예상이 예상된 인원보다 많이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李東奎委員 몇 %나 증가되었습니까? 명퇴자

들이

○總務課長 李東明 한 30% 정도

○李東奎委員 그래서 이 예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30% 정도. 그 다음에 상용직 인건비로 나머지는 우리가 보면 됩니까? 나머지 상용직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상용직 노임단가가 3%만 인상될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4%가 더 가산된 총 7%가 인상되었습니다.

○李東奎委員 3% 인상될 걸로 봤다는 것은 누가 보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기정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봤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네요. 정확하게 못 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초에 예산을 짜고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도 전부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깁니다. 이걸 왜 그렇게 편성을 합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변동요인이 있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변동요인이 뭡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상용직노동조합하고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우리 자치구하고 그래가지고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분들이

○李東奎委員 임금인상을 해달라고?

○總務課長 李東明 예, 구체적인 인상은 아니고 임금인상은 아니고 우리가 그 전에는 없었던 수당이 증설된 겁니다.

○李東奎委員 결국은 임금인상인 거고 수당제도로 해서 더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변동요인이 그거라는 얘기죠? 그것이 몇 %나 추가된 겁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노조가 원래는 위험수당이 없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상용인부나 토목과, 하수과 그런 데에 위험수당을 월 5만원씩 주기로 되었고 가족수당이 없었는데 1인당 1만 5,000원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게 협약을 하셨구만요?

○總務課長 李東明 예.

○李東奎委員 그 다음에 늘어난 인원수가 있었습니까? 상용직 늘어난 인원수

○總務課長 李東明 인원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아까 어디 보니까 14명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던데 그것은 뭐예요?

○總務課長 李東明 인원은 늘어난 게 없었고

○李東奎委員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14명이 늘어난 것은 뭐예요?

○總務課長 李東明 14명 얘기는 명퇴자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명퇴자가 14명 늘어나서 한 30% 정도 늘어나 가지고 최초의 예산보다 좀 더 추가된 것으로 보고 상용직 부분은 없던, 인건비 인상은 아니지만 최초의 인상분을 3% 정도 봤는데 거기에서 그분들하고 어떤 변동요인이 생겨가지고 위험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을 주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 부분은 차후에 꼼꼼하게 따져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동행정운영비 사업비 4,400만원 이것은 뭐예요?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總務課長 李東明 저희가 증액된 것이 동행정사업비 증액은 종로5·6가동 예비군동대 보수비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130만원이고 청운동사무소 도시가스 설치공사비가 691만 8,000원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李東奎委員 도시가스 사업을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나요?

○總務課長 李東明 동청사에 설치되는데 그리고 창신2동사무소 지하실 방수공사비 2,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李東奎委員 아니, 200만원이죠. '우기시 바닥 누수가 발생하여 창신2동 지하실 방수공사비로 200만원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한 전산기기'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200만원인데 2,0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보세요.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창신2동 지하실 방수공사가 2,000만원으로 늘

어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잘못 되었죠? 200만원이 맞습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예, 200만원은 아닙니다. 틀립니다. 2,000만원이 맞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죠? 최소한도 이런 정도로 우리 위원들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2,000만원짜리를 어떻게 200만원으로 써서 올립니까? 과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추경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이런 걸 올려요? 전부 정정을 해가지고 다시 가져오세요. 정정해 가지고 다시 가져올 동안에 본 위원은 질의를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필요없어요.

○委員長 李憲九 예,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 질의하십시오.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조금 소란스러운데

○委員長 李憲九 지금 질의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千相旭委員 행정관리국장! 질문 받으세요. 예산서 83쪽을 봐주세요. 여기 민원행정서비스 ISO 국제표준규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증받기 위해서 신청수수료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꼭 인증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증수수료가 600만원인데 수수료만 600만원이고 아무것도 없이 날아가버리는 것이고 그냥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민원행정서비스는 작년도 민원행정분야 최우수구로 가장 전화를 잘 받는 기관, 또 2000년도 민원행정 세계화 모범기관 선정, MBC 민원베스트기관 선정 등 서울시와 행정자치부, 언론기관으로부터 뛰어난 평가를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뛰어난 노하우와 경쟁력을 가진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에 인증을 받아 국제 수준으로 표준화를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투명성과 대외적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청과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ISO 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의 인증은 우리 구에서 제일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과 강북은 말이죠 도시환경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강북은 지금 종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주거환경이라든가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고 종로는 늘 우리가 얘기합니다마는 문화의 거리, 말하자면 우리 600년 역사가 숨쉬는 이러한 찬란한 곳으로서 어떤 지역적인 특징에 맞는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국에서 온 분들이 하루에 몇백명씩 몰려와서 생활하는 종로를 좀더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지금 야간에 국장님 한번 순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로5·6가를 가보면 노상에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가 아주 산적해 있어서 말이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거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민이 살 수 있는 공간, 깨끗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치중하지 않고 그것이 상징적인 전시효과적인 이러한 쪽으로 행정에 역점을 두고 심지어 거기에다 예산까지 투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종로구민들이 여러분들 귀에는 안 들릴지 모릅니다마는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종로구청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이것을 무슨 국제표준규격에 그것을 인증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600만원씩 줘가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 사람들 돈으로 평가를 해준다면 우리가 고맙게 받지만 우리가 600만원씩이나 수수료를 줘가면서 그것을 신청할 필요가 있겠느냐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것은 감액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千相旭委員 됐습니다.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지금 ISO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야는

○千相旭委員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기업의 경영이나 조직 관리, 환경이나 이런 생산적인 요소가 있는데 저희들은

○千相旭委員 전시적인 행정은 저희들은 원치 않습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런 분야가 아니고 민원행정서비스 분야로 금년, 작년부터 평가를 받으니까 그것을 인증을 받음으로써 우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완전히 오픈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환경이나 이런 千委員님이 환경 분야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환경 분야를 오픈시키는 것이 아니고 민원행정서비스 분야를 오픈해서 일반인들한테 우리 구청의 구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고

○千相旭委員 국장님! 보세요. 우리가 미국을 예로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환경을 국정, 시정 목표의 제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환경정책은 세워놓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이런 것 또 국가기본 운영목표, 방위정책 그것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통령이 누가 되고 장관이 누가 되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환경이 최우선입니다. 종로의 환경은 엉망입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쓰시라는 얘깁니다. 전시효과적인 것은 지양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토론을 하기로 하고.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사회지표라는 게 뭡니까? 책자 발간하고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3,5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합해서 5,000만원인데 책자가 1,500만원 용역비가 3,5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ISO나 지역사회지표 개발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바르게 좀 정확하게 일을 해보겠다는 뜻이 솔직히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기술적인 전문가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주민의 삶의 질 수준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사회지표 개발 용역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相旭委員 이것도 하등의 우리 납세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4쪽에 보시면 ISO 인증시스템 구축 또 용역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특징이 뭐냐면 용역비 예산이 많다는 것이 그것이 특징입니다. 국장님이 여러 계통에서 두루 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많다는 게 특징인데 행정관리 부서에서 용역비로 쓰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얼마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용역비가 여기 두 군데나 벌써 5,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ISO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용역비 2,000만원은 어디다 쓸 겁니까? 용도가 뭡니까? ISO 인증 용역비, 시스템 구축 용역비 뭘 용역을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뭘 합니까? 이것 용역 다 줘버리면 공무원들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아닙니다. 이러한 친화적인 행정서비스 기법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행정 토대가 국제표준규격인 ISO 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래서 千委員님 말씀에 돈 2,000만원이 물론 예산이 많으시죠. 그러나 앞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대외적으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에 이런 행정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공무원들은

○千相旭委員 필요하니까 물론 예산을 배정을 했겠지만 지표개발 용역비가 3,500만원 시스템 용역비 2,000만원인데 이 1,400명의 공무원들께서는 전문직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직 공무원을 이러한 용역에 투입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예산도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들을 활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보다 모릅니다. 우리 구정에 대해서. 또 하려면 다시 구청 공무원들이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대충 몇 장 리포트 써내는 것이 그것이 전부예요. 저희들도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북촌한옥 용역을 줘봤는데요 교수라는 사람들이 대학원생 몇 명 내보내가지고 사진 몇 장 찍어 가지고 1억 5천만원 받아먹더라구요. 제가 서울시장에 고건 시장 있을 때 '96년도에 혼을 냈습니다마는 그런 용역비가 우리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깎읍시다. 삭감하는 걸로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千相旭委員 아까 다 들었지 않습니까? 다 들었는데 뭘 또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85쪽에 이것은 아까 李東奎委員이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빼겠습니다. 그리고 李東奎委員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민원실 환경개선 시설비용 예산은 말이죠 이미 시설을 해놓은 것을 예산에 올린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지금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5억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써야 되는데 금년에 잘해 가지고 좀더 상을 받으려는 이런 뜻입니다.

○千相旭委員 지금 해놓은 것을 예산에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할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것을 부분적으로 더 할 겁니다.

○千相旭委員 그것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데 또 합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런데 위원님들! 타구에 보면 종합민원실 시스템을 보면

○千相旭委員 지금 주민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란다고. 민원실 보고 놀랍니다. 우리보고 돈 너무 많이 쓴다고 난리인데 거기다 또 돈을 더 바를 겁니까? 저는 이미 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더 넓혀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건물 자체가 너무 후지니까

○民願奉仕課長 林星圭 민원봉사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千相旭委員 말씀해보세요. 너무,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民願奉仕課長 林星圭 현관에 환경개선한 것을 제외하고 지적과하고 민원봉사과 사무실을 다시 환경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千委員님께서 현관만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사무실 안에 안쪽에는 지금 타 구청이나 아니면 타 시·도의 자치단체에 가보시면 지금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추세가 친절봉사에다 전부 역량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지금 굉장히 환경개선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도 민원친절에 대한 중요한 일익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작년도에 상 사업비로 받은 5억 중에서 일부를 환경개선을 해서 좀더 민원인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제가 아침에도 쭉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참 잘되어 있더라구요. 예산서에 민원대 시설비 5,000만원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민원대를 다시 한 걸로 알았어요. 다시 해서 그것이 5,000만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그 이상 좋게 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전부 자동문이고 환경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시장 어디에 가도 이 정도라면 A클래스입니다. A클래스. 저희들도 이번에 미국에 갔었습니다마는 워싱턴에 가서 워싱턴 시청과 시의회 다 가봤습니다마는 다 엉망이더라구요. 우리 종로구보다도 훨씬 못해요. 시설이 더 못해요. 도로는 울툭불툭하고. 왜 울툭불툭하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때우는 걸로 하고 서울시 도로가 국제수준에 해당하는 도로입니다. 매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민원실에다 나는 아까 李東奎委員님 질문하신 내용이 기이 민원실 시설을 한 내용 중에 예산에 아까도 말했듯이 추경 전에 시설을 해놓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빼가지고 그것을 지불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추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또 몇 억을 굳히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민원대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민원대를 들어내고 돈 5,000만원이면 일반인들이 20평의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것을 민원대에다 저 좋은 것을 들어내고 다시 설치한다는 말이세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허용하라는 겁니까?

○民願奉仕課長 林星圭 지금 저희들이 중구청 환경개선한 것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다가 지금 가져왔고 또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千相旭委員 중구는, 중구도 문제가 많아요. 남의 구청 얘기할 바는 아닌데 그곳은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곳은 자립도가 100%가 넘습니다. 쓸 데가 없어서 돈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그곳하고 비교합니까?

○民願奉仕課長 林星圭 그곳뿐이 아니고 지금 서대문구청, 성북구청 각 구청이 말이죠 광진구청, 시청은 말할 것도 없고

○千相旭委員 다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곳을 따로 전부 가보렵니다. 다 가서 이렇다면 나는 일반인들 불러놓고 여기에다가 이 정도면 어떠냐, 너희들도 외국 다녀봤으니까 국제수준이 되느냐 안되느냐 물어볼 거예요. 거기에다 또 무슨 몇억씩 더 처바릅니까? 그 좋은 민원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들어내고 5,000만원짜리 민원대를 또 갖다놔요?

○民願奉仕課長 林星圭 거기에다 그대로 놓는 것이 아니고 좌석 일체를 위치를 전부 바꾸어서 전부 하려고

○千相旭委員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납세자에 대해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을 한다면. 그것은 그만 그칩시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다보니까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安載弘委員 議席에서 - 千相旭委員님! 잠깐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민원실을 개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총 모두 얼마입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내가 알기로는 4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3억 8천

(○安載弘委員 議席에서 - 3억 8천이 아니라 지적과하고 합치면 4억이 넘는데 여러분들이 4억이라는 돈을 위원들을 설득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계획도, 조감도 내지는 어떤 여러분들이 투입하는 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이 된 효과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세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기회를 주시면 그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安載弘委員 議席에서 -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하세요.)

○千相旭委員 설명을 뭐 듣습니까? 저는 민원실 보고 감격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호화롭고. 거기에다 4억을 처바른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 시상금 5억 받은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타구 수준을 따라는 가야 되겠다 타구를 일부러 찾아가서 견학을 하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은 우리 재정 예산을 혹시 낭비하지 않느냐, 보다 더 우리가 시상금 받은 것을 좀더 다시 재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좋은 평가를 받고 일반인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효과를 내자 이런 뜻입니다.

○千相旭委員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것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사용하지 않고 그 돈을 전부 이 돈에 쓰자는 이런 얘깁니다. 시상금 돈입니다.

○千相旭委員 어디에 나와있더라구요. 다른 데에다 그것을 예산을 반영했다가 도로 환수를 해서 한다는 건데 그 돈 쓸 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것은 예산집행이 안되어 있고 필운동-신교동간의

○千相旭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을 얼른 듣기에는 시상금이니까 아무렇게나 쓰자는 얘기인데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화롭고 찬란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또 돈을 4억을 투입한다면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돈을 아주 보람되게 아름답게 쓰려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들한테 미안해서 더 얘기 못하겠네요. 본 위원의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千相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하 신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선심행정을 하는 바람에 빚을 많이 져서 파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아까 千相旭委員님께서 워싱턴 의회를 방문했을 때 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는 지금 우리 구청사에 있는 화장실보다도 엄청나게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소에다 1억 7,600만원이나 쏟아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해서 칭찬을 받고 싶고 이러고 싶지만 그러나 여기에다 돈을 1억 7,600만원을 들여놓고서는 화장실 개보수를 했다면 다들 욕을 합니다. 주민들이.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집행부에서 생각하실 때는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 후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한 기본적인 이유가 이런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적극성을 가지시고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안설명을 할 때 잠깐 시간을 이용해서 그 파트마다 데이터가 있다면 백데이터를 제시하시면서 설명하신다면 의원님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것이고 그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조정할 것 아닙니까? 그 설명하는 데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99년도 최초의 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이 70억을 올렸죠? 그러다가 추경에 54억 2,216만원을 증액했죠? '99년도 최초의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였습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아마 40억일 겁니다. 그리고 '99년 제1회 추경이 7억 4,500만원입니다.

○企劃豫算課長 林晛宅 예,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쉽게 봐서 '99년도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서 47억 4,5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2000년 추경을 포함해서 124억 2,216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2개를 합쳐서 공제를 해보면 세계잉여금이 약 77억이 차이가 납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세계잉여금의 산정은 여러분들이 추경 편성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9년과 2000년도의 추경을 포함한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7억씩 나가는 기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企劃豫算課長 林晛宅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70억이 생길 것으로 가정하고 편성을 한 겁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林晛宅 금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건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安載弘委員 구조조정해서 조정된 인원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林晛宅 자세한 구조조정 인원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꼭 제출하세요. 여러분들은 제출하신다고 하고서는 꼭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알뜰하게 썼을 때 최초 예산보다 잔금이 남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하고, 두번째는 여러분들이 세입추계를 하거나 예산편성을 할 때 과다편성을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2000년도

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약 124억은 적어도 '99년도 예산집행을 하면서 물론 구조조정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豫算課長 林唾宅 금년도에 많이 나온 것은 구조조정의 여파가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安載弘委員 구조조정의 여파로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추경을 편성한 기본적인 재원은 뭐냐하면 세계잉여금인 54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추경편성을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구조조정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따가 데이터를 주시면 과연 그런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李東奎委員님이나 千相旭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굉장히 소비성 또는 낭비성 편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企劃豫算課長 林唾宅 금년도 추경을 보면 법정경비가 많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비보다는 법정경비 꼭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번에 많은 것으로

○安載弘委員 법정경비를 제외한 일반 소모성 경상비용도 많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주로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구청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고 기타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비도 약 4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은 소비성, 낭비성 예산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심의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 이 순세계잉여금 산출에 있어서 그러니까 적어도 예산 편성할 때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너무 전년도에 비해서 약 70억 이상 차이나는 것은 잘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문제가 대두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앞으로 나가는 퇴직금이나 일시급여를 하게되면 결국은 그게 그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자동 사랑방 매점의 '99년도 순이익이 얼마였습니까? 약 5,000만원 이상 나왔죠? 매출 대비 순이익이 얼마나 나왔어요? '99년도의 순수익이 잘 모르세요?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말이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 하면 효자동 사랑방 순수익금은 구청 복지위원회에서 쓸 수 없는 돈이므로 잡수입으로 잡아서 2000년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세입예산에 잡수입으로 증가된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총무과장께서는 '99년도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安載弘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99년도 답변내용을 저희가 찾아본 결과 답변내용이 직원후생복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양해사항으로

○安載弘委員 그것은 그쪽 얘기죠. 지금 후생복지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후생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근거는 법적 근거가 아니고 우리 규칙이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무슨 규칙이요?

○總務課長 李東明 후생복지위원회 규칙

○安載弘委員 지금부터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만약에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적어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적어도 그 담당과장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랑방 매점에서 발생한 매출이익을 복지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무슨 규칙입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지금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죠?

○安載弘委員 그렇죠. 법적 근거

○總務課長 李東明 법적 근거는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것이고 우리 내부지침

○安載弘委員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것 보세요. 여러분들은 사랑방 매점 수익에 대

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복지위원회로 돌려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로니에 공원에 가면 자판기 있죠. 자판기 임대수수료도 저희가 징수하죠. 잡수입으로 그렇죠? 탑골공원 매점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잡고 있습니다. 종묘 앞 공원 매점에서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사랑방 매점 수입은 잡수입 처리를 안 합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사랑방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임대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 가지고 이런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우리가 지난 번 '99년도 감사 시에 그 당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으로 봐 가지고 양해사항으로

○安載弘委員 양해사항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 건에 대해서 양해한다고 해도 제가 양해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정당하게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하는 것이 왜 제가 양해해서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복지위원회 경비로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질문한 의원이 양해했다고 여러분들이 그 법적 근거 없이 복지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양해했다고 용납이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적어도 총무과에서는 수년 동안 효자동 사랑방 매점의 순수익에 대한 그야말로 법적 근거 없는 불법적인 유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2000년 1회 추경예산에 여러분들이 세외수입에 그 수입을 올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법적 근거도 없잖아요. 따라서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이름으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효자동 사랑방 매점 수입 이 자료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점의 매출실적은 2억 8,28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이 2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3,88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유용된 것에 대해서 유용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이 3,88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2000년 1월부터 2000년 5월 현재까지 순수익으로 발생한 사랑방 매점의 매출이익은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의회 해당되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安載弘委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行政管理局長님!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제가 行政管理局 局長으로 부임한 지 아직 수개월 되지 않습니다. 현재 安載弘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랑방 매점 판매수익은 세외수입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후생복지위원회에 들어오는 것 또 구내식당 운영하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을 위하고 또 주민들을 위하는 뜻에서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나 기관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을 지원해서 보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조를 안하고 유사한 기관의 방향대로 사랑방 수익금을 후생복지위원회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특히 安載弘委員님께서 우리 공무원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기존에 했던 오래된 관행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하시고 우리 공무원을 도와주신다는 측면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이렇게 이뤄지고 있었는데 지금 구내식당으로서는 기본적으로 한 그릇에 1,800원이면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으로 보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법 이전에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安載弘委員 지금 국장님 답변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의원들 스스로 불법행위를 묵인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사용하는데 의원들로 하여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니까 또 경비니까 양해를 해달라는 얘기는 의원들로 하여금 불법을 묵인해달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랑방 매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연 5,000만원이 되든 3,000만원이 되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세요. 적법하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관리국장 답변은 그 내용은 말이죠. 징계감이에요. 징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원들한테 불법행위를 묵인해달라는 것이 타당한 얘기입니까? 그게 답변입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타구나 혹시 이런 관리에 있어서 제가 법적으로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安載弘委員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재무국장 하실 때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복지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는데 복지위원회 규정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때 사랑방을 오픈할 때 구청장이나 구의 방침이 그 이익은 후생복지위원회에 전입시키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生活福祉局長 李炳滿局長이 그 당시에 총무과장으로 계셨으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安載弘委員 委員長님! 지금 질문을 잘못하고 계세요. 지금 이것은 불법사항입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 위원이 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불법사항이니까 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변명을 듣자는 겁니까?

○委員長 李憲九 변명이 아니라 그 당시의 담당 과장으로서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시작되었는가

(○千相旭委員 議席에서 - 회의진행 발언 좀 합시다.)

○委員長 李憲九 예, 말씀하십시오.

○千相旭議員 지금 시간도 벌써 4시 반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예산은 예산심의를 빨리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安載弘委員께서는 정말 값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6월 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安載弘委員 아니죠. 千相旭委員님! 왜냐하면 효자동사랑방 매점수입은 예산편성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으로 올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千相旭議員 이미 추경예산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능률적으로 짚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동안에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구내식당에서 1,800원짜리 식사를 하는데 1,800원 가지고 그만한 식사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도 먹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식사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 복지후생비에 투입한다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단지 우리 安載弘委員께서는 날카로운 지적인데 합법적으로 사용하라 그런 뜻이죠.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5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시상금도 합법적으로 그런 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에 문의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시에서는 시상금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강남 쪽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해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대개 강북에 시상금이 배정되는데 그것은 예산 지원의 하나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 제가 지난번에 강북구청에 시상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따진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의 자립도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시상금을 많이 줬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시상금을 가지고 낭비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예산심의를 하는데 주력해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기타 다른 토론을 하고 安載弘委員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것은 감사 때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좋겠

습니다. 본 위원의 말씀은 이상인데

○安載弘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올린 것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여러분들 뜻대로 또는 조정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적어도 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적어도 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합법적인 길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千相旭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저도 정말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은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박봉에 엄청난 업무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최근에 기여금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부어왔던 퇴직금에 대한 몫조차 상당부분이 내년도부터는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대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정말 미래를 위한 확실한 보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거지 어떻게 아닌 것을 기라고 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총무과장한테 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질문의 기본적인 취지는 옳은 것은 옳다고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성한 예산이 적어도 합법적인, 논리적인, 객관적인, 효율적인 근거가 있다면 위원들이 심의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사항은 고쳐가자 이것입니다. 추호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질의의 뜻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께서는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이 있었지만 이것을 위탁관리하든지 또는 직영관리하든지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든 잡수입으로 잡든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식당이나 후생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편성을 하세요. 여러분이 편성을 해서 행자부의 감사에 걸리거나 이런 불법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여러분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깎을 생각이 근본적으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安載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아까 하던 질의와 연관시켜서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아까 그것 잘못 기재되어 있죠?

○總務課長 李東明 제안설명서에 오기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서에는 2,000만원으로 제대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제안설명서에 200만원으로 잘못 오기 되어 있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것은 그렇게 깎으라고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렇죠? 그런 것 하나라도 신중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물론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밑의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세세하게 그런 것 하나라도 또박또박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예비군지원사업 중에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기초단체에서는 그것을 목을 짚어줄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위에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시고 이것은 제가 볼 때 행자부 지침사항은 아닐 거예요. 행자부 지침사항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려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總務課長 李東明 행자부 지침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여태까지 동대지원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지원하고 있는 동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반영을 하라는 보완지침이 작년도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겁니다. 지금 종로구의회를 보세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공무

원 여러분들 우리 종로구같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일하는 구의회는 없을 거예요. 구의원들 책상 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예산을 쓴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신뢰를 잃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한테 반사적인 이익이 온다든가 또는 확실한 대안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원계장님하고 밖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이 어떻게 어떤 목으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목을 짚어서 편성을 해주게 되면 다음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워 돈까지 갖다 써서 이자까지 내는 판국에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진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업만큼은 우리가 통과시킬 수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하셔 가지고 윗분들하고 상의를 다시 하셔서 재검토하셔 가지고 정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하시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국군은 국가 목적 수행을 위해서 최전방에서 일차적인 저지를 하죠. 또 지역에서는 예비군이 지역의 우리 같은 경우는 219연대가 지역방위를 커버합니다. 우리 구민을 커버하기 위해서 예비군들의 전산 연동 체제, 구동별 장비 1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 요구액은 이분들이 6,5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국군은 전방에서 일차적으로 저지하는데 예비군은 지역의 민방위, 우리 종로구민 18만 7,000명에 대해서 방위를 한다는 생각으로 위원님들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東奎委員 그것은 알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적든 크든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크고 적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니까 자꾸 그 얘기는 하나마나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 보조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지원사업을 이런 경비는 지출을 해라 그러면 국가사업인데 이 국가사업을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어떤 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국가보조금을 더 가져올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쓰는 이자를 더 싸게 해준다든가 하는 반사적인 이익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그 말입니다. 왜 국가사업을 우리가 대신합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적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못해줍니다. 여러분들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득을 시켜주신 다음에 다음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생활복지국의 청소행정과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금 얼마 잡혀 있는 겁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수도권매립지 건설사업비가 당초 저희가 금년도에 부담해야 될 것이 21억이었습니다. 저희가 21억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일부가 삭감되어서 12억 8,000만원만 반영이 되어서 나머지 부족분 8억 1,500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마는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7월 1일부터 안 받는다 10월 1일부터 안 받는다 지금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될 수 있으면 10월 1일 심하면 내년 6월까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내년 6월 이후에는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사료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지금 우리가 거기에다 돈을 들여넣고 있잖아요?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래서 그때 가면 가동이 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만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서는 7월 1일 한다고 했다가 3공구 매립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월 1일로 보고 있습니다. 3공구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식물쓰레기를 현재 6월까지 가면 좋겠지만 10월 1일부터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특히 수도권매립지 조합에서 각 구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마 확인도 나올 걸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처리분을 4억 5백을 반영을 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8억 2천 얼마가 부족하다고 했죠? 수도권매립지 자치구별 건설부담금이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기타 소요되는 경비는 구체적으로 과장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淸掃行政課長 鄭倫漢 주요 초점은 차량 임대 부분에 대해서 쉽게 5대 월 100만원씩 3개월 해서 1,500만원 정도 추산을 했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분입니다. 이쪽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 처리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 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거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기존의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일단 주민들이 분리를 해서 하면 그 분리된 부분 외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다른 지역의 처리시설에 반입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김포매립지와 같은 방법으로 반입을 하는데요 문제는 일반적인 생활쓰레기가 김포에서 톤당 1만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처리비용인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비용이 6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과되는 비용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관내에서 1일 100톤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5톤 정도는 자체 감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대형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보면 의무감량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주택 부분에서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자체에서 알아서 음식물을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발효흙을 공급해서 자체 감량을 해서 5톤 정도로 하고 나머지 75톤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싸게 처리하는 원칙하에 각 현장을 직원들이 가서 확인해본 결과 강동에 있는 푸른농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이 자치단체간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3개월간 톤당 6만원씩 30일을 잡아가지고 총 4억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산을 한 것입니다.

○李東奎委員 4억 500만원. 투자비가 얼마죠?

○淸掃行政課長 鄭倫漢 우리는 투자비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집 운반 차량이나 임대하는 정도로 나머지 부분은

○李東奎委員 건설부담금은 얼마예요?

○淸掃行政課長 鄭倫漢 여기에는 건설부담금이 소요가 안됩니다.

○李東奎委員 총 얼마에서 8억 2천은

○淸掃行政課長 鄭倫漢 8억 2천은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김포 생활쓰레기 매립공구 건설비고 이 음식물쓰레기는 다릅니다. 방향이 틀린 건데요 8억 부분은 김포로 내야 되는 돈이고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 예를 들자면 강동에 있는 데에 내야 되는 돈입니다.

○李東奎委員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淸掃行政課長 鄭倫漢 포함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음식물부분은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는 부분이 4억 500만원이고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8억 2천에 포함되어 있냐구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아닙니다. 총 합하면 12억 3천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李東奎委員님! 김포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비용 8억 2,000만원은 일반쓰레기를 처리해 매립하는 데 건설하는 비용이고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시설을 별도로 안 해도 일반 음식물 처리하는 데다 갖다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비가 6만원으로 이렇게 비쌉니다.

○李東奎委員 그렇죠? 상당히 비싸군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갔고,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때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10억 정도 삭감을 시켰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에 이 예산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에 지금 꼭 반영시켜서 받아야 되는 돈인지 아니면 다음 추경에 가능한 건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장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간단히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수도권 매립지 건설사업비 부담금은 저희가 금년 중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李東奎委員 그것이 얼마입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것이 8억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4억 500만원은 저희가 김포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았을 때 바로 버릴 수 있는 비용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가 10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까지만 연기만 된다면 저희는 좋습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에서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500만원은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고 넘어가고 또 하나만 더 물을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시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아름다운 종로인 사랑고리 사업 참여자 중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약 300명에 대하여 표창을 함으로써 이들을 격려하고 후원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603만원을 반영했다고 그랬죠? 이것이 지금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사랑고리가 내용과 이유가 뭡니까? 사랑고리를 실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금 저희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 어려우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들을 틈새가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형편이 나으신 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李東奎委員 예,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고리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런데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10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복지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금도 늘려주겠다고 하니까 각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동의 담당자들이 어떤 작태를 부리고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잘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탁상에만 앉아있는 거예요. 조사를 하라고 해놓으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 기존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빼버리고 법적으로 안된다 제한으로 걸린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고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지침 하나도 제대로 못 보내요? 이래 가지고 무슨 사업들을 하고 맨날 추경에다 툭하면 이런 거나 한다고 올려보내고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어떤지 아세요? 실태가. 동부지역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아마 국장님

이나 과장님도 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직자라든가 가족수가 많다든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엄연히 그 자식이 나가고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찾아가서 '이 사람 기다' 하고 가르쳐주면 법적으로 안됩니다. 뭐가 있어서 안됩니다. 규정, 규약에 다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라는 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예산편성에다 올려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걸 올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세요. 국장님! 제가 부탁입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신청은 저희 서울시나 저희 구에서 지침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지침을 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신청을 받다보니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4,400만원 재산이면 저희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준은 재산이 2인 이하일 경우에는 2,900만원이 넘어가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인은 3,200만원 그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가로 기준을 해서 한다면 방 한 칸만 가지고 있으면 서울에서는 삼사천은 가기 때문에 전세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청장님들하고 저희도 서울시에 구청장•시장 연석회의에서 시장님이 그렇다면 토지는 시가로 하지 말고 공시지가로 해라 건물은 재산세 과표로 해라 그래서 아마 조그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세를 들어있는 사람들은 전세계약서에 전세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사부 감사관이 저희 구를 방문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낱낱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기존에 수혜를 받던 분들이 수혜에서 탈락된다고 하면 우리 구나 국가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의식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0일까지 신청을 마감을 했는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사부에서 신청을 계속 받아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접수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일단 현지조사를 하고 재산조사 같은 것을 하고 지침이, 저희도 충분히 보사부 쪽에다 의견 개진을 했기 때문에 보완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하나 보사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수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그때는 보사부나 그런 분들에게

○李東奎委員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시키겠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아닙니다. 저희들도 물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계시는 직원들한테 실망을 대단히 했습니다. 왜 실망을 했느냐면 대통령께서도 현실주의로 가서 과감하게 넘어갈 것은 넘어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규정, 규약 또는 제한에 막혀서 일을 못하고 또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누구를 구제해줄 거예요? 대통령 말로만 공약사항 떠들어대는 거예요. 누구를 구제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과감하게 이렇게 위에서도 그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왜 여러분들이 전부다 똘똘 뭉쳐서 건의를 못합니까? 건의해 가지고 해야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래서 저희도 구청장•시장 연석회의를 하게 된 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견 개진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이런 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발빠르게 해줘서 정말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분명히 사

랑의 연결고리 같은 것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틈새가정이 나타나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李東奎委員 그래서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까지 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 구제를 못해주느냐고 하는 얘기죠. 그것이 첫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하나의 의원님들하고 다른 것이

○李東奎委員 복지국장님! 우리 李 局長님 올라오고 나서 우리 崔 課長님 오고 나서 전에 복지국에 계시던 분들보다도 일을 더 못하고 계세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전에 계시던 분들은 과감하게 일을 잘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두 분이 사령탑으로 앉더니 더 일을 못해요. 과감하게 일을 치고 나가지 못해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런데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 보사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李東奎委員 맨날 지침, 규약, 규정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우리 공무원들은 그 지침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있는 문제점들을 수시로 수합을 해가지고

○李東奎委員 한계선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침이 그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나오면 되는데 재산 얼마 이하이어야 된다고 딱딱 한계가 있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밑에 분들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안 움직여줘서 못한다고 해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런데 그 기준 안에 있는데도 누락되었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의 잘못이죠. 그런데

○李東奎委員 李 局長님! 과감하게 일을 치고 나가보십시오. 일 못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인이 안 찍히시기 바라고 정말 부탁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런 험악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로 과감하게 한번 치고 나가주시는 그런 새로 온 李炳滿 局長님이 제일 잘 하더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질의 저는 한번도 안 했어요. 위원장님! 사회 보실 때 질의가 길면 좀 제재를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24시간 하루종일 할 겁니까? 예산 심의니까 예산 심의의 요점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해야지 한번 붙들면 우리가 어떻게 앉아있어요?

○委員長 李憲九 우리가 그만큼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했으면 어느 정도 알만할 때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주지 말고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먼저 공무원헌장 제작 건립비로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어디다가 건설하실 겁니까? 84쪽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어디다 할 건지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의원님들한테 고견을 받들어서 장소를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구민헌장 건립비는 어디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저희 공무원들 헌장비 제작은 공무원의 다짐이고 결의고 일단 구민헌장비는 아직 제가

○洪起瑞委員 아직 못 했죠? 그러면 현재 구민이 더 큽니까? 공무원이 더 큽니까? 우리 구민 전체 20만 구민이 크냐 아니면 1,500명의 공무원이 더 크냐는 얘기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공무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구민한테 저희들이 실천 다짐을 하는 겁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구민헌장 건립비도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같이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공무원헌장비는 주민을 위해서 18만 7천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입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어차피 헌장비를 설치하려고 하면 구민헌장도 우리가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올라올 때 구민헌장 제작비나 이렇게 공무원헌장 제작 건립비나 똑같이 해서 올려줘야지 어떻게 공무원헌장 건립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바로 올라오고 구민헌장은 벌써 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비 하나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구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건데요 공무원헌장은 공무원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민들한테 봉사하고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하고 결의를 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베푸는 것이지 1,500명한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항상 말씀하신 구민헌장 이 내용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창신2동 동사무소 건립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창신2동 청사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냐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가 안 지났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오래 되었어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오래 되었답니다.

○洪起瑞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보수비가 5,400만원이 잡혀있죠? 절 문수사하고 금선사. 그러면 종로구 관내에 있는 절도 또 우리가 보수를 해야 돼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文化振興課長입니다. 관내에 전통사찰이 지금 10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긴급하게 보수를 요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2개소를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된 곳입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이렇게 되면 국비나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비로까지 이런 데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사찰까지 보수를 해줘야 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종교 차원을 떠나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전통사찰을 보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구비와 시비가 50%가 확보되어야만 국비가 나머지 50%를 보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이미 국비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도 마련되어 있고

○洪起瑞委員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종교사업인데 종교사업에 제일 우리가 예를 들면 세금도 안 받잖아요. 국민들이 내야 될 세금도 안 내는데 이런 데에까지 우리가 다 보수를 해줘야 된다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종로에 보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도 보수를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명륜3가동에 김종국가 같은 데 가보세요. 그것은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도 다 허물어져가서 비가 새고 이런 데도 손을 못 보고 있는데 전통사찰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데까지 보수를 한다면 이것은 이치에 안 맞죠. 우리 문화재로 보호하려고 지정이 된 그런 데에도 보수를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0개 문화재에 6억 4,5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지금 말씀하신 명륜3가동 문화재도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는 어떤 저희의 문화유산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해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글쎄 그런데 우리가 선후가 있다는 얘깁니다. 선후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현재 서울시나 이런 것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지만 우리 명륜3가 김종국가 같은 것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비가 새고 낡아가지고 지금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이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추해서 못 봐요. 사실 문화재 보호를 해제해버리든지 아니면 관리를 제대로 하든지 해야지 가보면 누가 가서 보더라도 보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선과 후를 선택해 가지고 모든 것을 보수를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직대제 문화축제 400만원 올라온 것도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안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매년 10월달에 사직단에서 사직대제를 지내는데 거기가 사직단이 정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이 높기 때문에 관람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행내용을 잘 보기가 힘이 들어서 멀티비전을 임차를 해서 관람을 용이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洪起瑞委員 그런데 저도 여기에 참석을 해봤지만 여기에 멀티비전까지 설치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종로구의 예산이 풍부하다고 하면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더한 것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멀티비전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로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호기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해서 외국인들 여행사하고 연계를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꼭 좀 이것을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차라리 개방을 해서 안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낫죠.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그런데 그곳이 엄숙한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안에 자유롭게 출입을 못하게 하더라구요.

○洪起瑞委員 그러면 엄숙하게 하더라도 누가 와서 관람하는 사람들은 식장이 엄숙하게 되면 관람객들도 엄숙하게 해요. 차라리 안을 개방을 해서 보여주고 해야지 멀티비전으로 해봐야 효과가 있겠어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사직공원은 안은 개방이 되는데 그 단 안에 있는 것은

○洪起瑞委員 그것은 고려를 해봅시다. 그리고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시설보수비로 1,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디를 보수한다는 겁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마로니에 야외무대 바닥이 에폭시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잦은 공연으로 인해서 도색도 벗겨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상당히 보기에도 그렇고 해서 조명등도 무게를 지탱을 못해서 상당히 파이프가 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한푼이라도 예산을 아낄까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관람석 600석 바닥을 칠하는 문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기에 부득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그 정도로 듭니다.

○洪起瑞委員 93쪽에 보면 노인의 날 작품전시가 어디에서 작품전시회를 해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生活福祉局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작품을 한 것을 저희가 전시할 계획은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경비를 700을 했습니다.

○洪起瑞委員 작품전시회를 할 계획이라는 얘깁니까? 10월달에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洪起瑞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수사는

지난번이 불이 나서 전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무슨 보수비가 그것도 구에서 25% 대준다고 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완전히 전소된 데에다 어떻게 보수비로 돈이 나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문수사는 무학대사가 창건한 절로 알려져 있고 이번 보수는 요사체, 스님들이 기거를 하고 공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委員長 李憲九 차라리 신축하는 거네.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鄭泰淳委員! 질의하십시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질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셨으니까 질의는 안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安載弘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직원 후생복지 기금으로 잡히지 않은 구내식당하고 구내매점 그리고 효자동 사랑방에 있는 매점하고 팔각정에 있는 망원경 임대 수입금 있죠? 그것하고 자판기 수입금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에도 그 문제가 지금 아주 문제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수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투명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검사할 때도 검사하기 좋고 그리고 어차피 그 부분에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또 쓰실 때도 투명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기금을 쓴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근거가 명확해야지 쓰실 수 있고 그래야 나중에 결산검사라든가 할 때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泰淳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서 인건비 제한 1억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최초의 2000년도 본예산에서 일괄적으로 48억인가가 법정 운영 예상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金誠泰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金誠泰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금년도에 소위 체력단련비라고 명칭되어 있는 가계안정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로구청 직원의 경우는 250%가 예산에 반영되어서 전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단 1%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제가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250% 중 100%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일부 강좌를 증설해서 강좌 증설에 따른 강사료 지출이라든지 또 한 가지는 그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인데 수영장 수질관리를 위해서 자동크리너라는 자동으로 수질을 관리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민생활관의 경우는 그것이 2대가 있는데 구민회관의 경우는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대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수영장이 가동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이 약 3,000만원이 추가되어서 총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예산서 81쪽의 1억 7,000만원의 내역에 수영장 필터관리를 위한 필터구입비가 3,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 100%가 얼마나 됩니까? 체력단련비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金誠泰 가계안정비가 4,000만원입니다.

○安載弘委員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하고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약 4억 5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아까 생활복지국장 답변 중에서도 6만원은 상당히 비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질적으로 생활쓰레기 잔밥처리 문제는 앞으로도 예산과 관련지어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잔밥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경비는 지출될 것이라고 보는데 잔밥처리 또는 잔밥을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아까 청소과장도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나 대형음식점 같은 데는 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현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업자한테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한 2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100톤 중에서. 그리고 한 5톤 정도는 발효흙을 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安載弘委員 남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민간한테 가는 거겠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처리업자한테 가는 거죠. 그 처리업자라 하면 강동 같은 경우는 민간하고 구청하고 합작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임대료가 1,500만원인데 차종은 무엇입니까?

○淸掃行政課長 鄭倫漢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데가 하는 것이 트럭을 개조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차종은 보통 1.5톤에서 11톤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지역현실에 맞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100만원 말고 남은 음식물 수거전용 차량 외에 지원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100만원 받고 누가 임대해 줍니까?

○淸掃行政課長 鄭倫漢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대행업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니까 일단 양해 하에 이것이 한시적으로 운행되는 거니까 가능한 한 우리도 예산을 절약하고 그런 형편에서 움직여 가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예산 절약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은 경우에 따라서 모자랄 수가 있어요. 지금 鄭課長 답변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차량을 임대한다는 그런 계획인데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 회사의 차를 임대할 계획입니까?

○淸掃行政課長 鄭倫漢 일단은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신규차량을 도입하지 않는 한 기존차량을 임대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차량대수가 모자랄 것 아니에요?

○淸掃行政課長 鄭倫漢 그쪽에서는 단지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기업이 이쪽저쪽 커져있고 비단 우리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부적으로 접촉하는 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량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安載弘委員 하여간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로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안 주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서무관리 자체사업비에서 전자식 교환기 증설이 7,6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동 일반전화를 행정전화로 통합하는 시스템 같은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동기능 전환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기능이 축소되는 경우에 이 7,650만원을 들여서 행정전화를 놨을 때 그 산출기초가 동기능 전환 후를 산정해서 산출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를 두고 산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전화교환기는 지난해에 3억 1,200만원을 들여서 1,500회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ISDN 전자식 교환기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행정전화 및 구청 개인전화 1,017회선, 국선 300회선, 행자부 전용선 60회선 디지털 폰 50회선 등 총 1,430여 회선을 사용 중에 있어 거의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동기능 전환시 가장 필요한 회선을 사전에 확보해서 또한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폰 전화기가 노후하여 교체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비용하고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安載弘委員 7,650만원은 동기능 전환 후를 고려해서 행정전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다 이거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安載弘委員 이런 것도 그래요. 7,650만원이 올라왔으면 사실 의원님들이 7,650만원 포괄예산이 올라오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백데이터를 주고 적어도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예산심의나 또는 추경심의가 있을 때는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나눠주시면 일목요연하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이상입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行政管理局長님께 묻습니다. 예비군지원사업에 대해서 동대전산연동체제 구축 사업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 동별 전산망 구축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동별 예비군동대에 구 통신장비 교체예산으로 동 단위로 100만원씩 1,9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동 단위에 100만원씩 전체 주전산망에 500만원 그래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지금 현행법을 보니까 예비군부대 운영장비 및 물자지원을 하도록 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이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상급부대 방침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설치 및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예비군육성지원으로 부담한다. 단 2001년도 이후 운영비는 국방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한시적 기금으로 저희가 책정해 주는 것으로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한시적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목을 걸어놓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李東奎委員님께서도 지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역방위

○李東奎委員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어렵습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 정부방침은 지방자치단체가 향토방위작전이라든지 예비군 운영에 대해서 지원해줘라 이런 지시입니다. 지금 주전산기 설치하는 것이 한 6,000만원이 되고 동대간 운영하는 것이 500만원 지금 그래서 6,500만원인데 지금 주전산기는 군부대에서 하고 우리는 동부로 연결하는 500만원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李東奎委員 아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군 육성지원이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에 보면 행정자치부가 2000년 기본지침에 보면 추가편성지침이 '99년 11월인가 시달되었을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경에만 반영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시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계속사업으로는 어렵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일단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시고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리고 이 예산이 여러분들한테 편성을 해서 준다고 해도 타지역보다 앞장서서 가지마세요. 이것은 지켜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드리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다른 지역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신 다음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집행에 있어서는 李東奎委員님 말씀대로 절대 앞서지 않고 중하위 정도로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런 식으로 꼭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책정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질의가 아니라 지금 각 과에서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온 예산서를 보면 전부 포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3% 인상 이렇게 해놓고 378만원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근거를 예산편성 올린 과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는데 각 과에서 올린 예산이 보편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계수조정을 안 할 것이고 이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면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 과에서는 여러분들이 올린 예산에 대한 백데이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憲九 관계공무원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34分 會議中止)

(18時23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토론해 주십시오.

○安載弘委員 예산서 83쪽에 일반운영비 종로지역사회 지표책자발간 1,500만원과 예산서 84쪽에 연구개발비 종로지역 사회지표 3,500만원 예산서 88쪽 시설비 및 부대비 구청사 제1별관 민원실 종합환경개선사업비 3억4,32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安載弘委員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安載弘委員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安載弘委員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0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27分 散會)

○出席委員 9人

李憲九 安載弘 鄭泰淳 千相旭
朴鍾植 洪起瑞 李東奎 劉燦鍾
金正大

○出席專門委員

姜光日

○出席關係公務員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監査擔當官　金周會
總務課長　李東明
企劃豫算課長　林晛宅
民願奉仕課長　林星圭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淸掃行政課長　鄭倫漢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金誠泰